

의안번호	제493호
의결연월일	2022. 5. 11.

-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4. 29. 예산군수
- 회 부 일 자 : 2022. 04. 29. 행정복지위원회
- 상 정 일 자 : 2022. 05. 09.
제2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민원봉사과장 : 김창배)

가.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조치, 지원 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박 우 현)

- 본 조례안은 2022. 1. 11.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원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서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여 채권의 일반적인 기간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 참고: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표1]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p> <p>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u>에 <u>의료비</u>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의료비</u> ----- ----- -----.</p> <p>③ (현행과 같음)</p>